

대구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1나32148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1나321482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9. 7 선고 2020가단5192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규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권중한

피고, 항소인C 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길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경수

변론 종결2022. 5. 18.

판결 선고2022. 6. 15.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9. 7. 선고 2020가단51928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사이에 2019. 3.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144,859,8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44,859,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피고 사이에 2019. 3.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163,076,02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3,076,02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의 이 부분에 기재된 각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 및 '피고 B'를 각 'B'로 고치고, 각 '피고 C 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C 영농조합'이라 한다)' 및 '피고 C 영농조합'을 각 '피고'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3면 2행의 '163,076,026원'을 '160,376,026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면의 '다. 피고 B의 재산상황'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5면의 [인정근거]의 '갑 제1 내지 8호증'을 '갑 제1 내지 6, 9호증'으로 고친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B의 무자력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B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B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먼저 B의 적극재산을 본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는, ① 이 사건 매매부동산 2,500,000,000원 상당, ② 경북 칠곡군 Y 외 1필지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50,000,000원이 있었는데, 그 합계는 2,550,000,000원이다.

피고는, 그 밖에 B가 직영하던 Z 식육식당에 설치한 유가공장 가공설비 및 정육 쇼케이스 캐리어(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를 적극재산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10호증의 6 내지 9는 이 사건 설비의 설계도면 및 각 견적서(2019년 1월경 작성), 이 사건 설비를 양도담보로 하여 B가 주식회사 AA로부터 금전을 빌린 공정증서인데, 위 각 견적서상 공급받는 자는 R, Z 고기마트(왜관점) S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설비를 B의 적극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위 각 견적서상 대금이 전액 지불되었는지, 만일 그렇다면 어떠한 금원으로 지급되었는지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여 이를 밝힐 것>이라는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관하여, 현재까지 어떠한 금원을 지급되었는지 밝히고 있지 않고, 금융거래내역 또한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설비를 B의 적극재산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B의 소극재산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는, ① L에 대한 채무 210,000,000원, ②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원리금 1,626,938,838원(= 원금 1,620,640,000원 + 이자 등 6,298,838원), ③ 주식회사 M에 대한 채무 150,000,000원, ④ 주식회사 N에 대한 채무 170,000,000원, ⑤ O에 대한 채무 350,000,000원¹⁾, ⑥ 원고에 대한 채무 144,859,800원 등이 있는바, 위 합계만도 2,651,798,638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의 소극재산은 적극재산을 초과하였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만,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매매부동산은 B의 전체 적극재산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제외하면 B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점, ② 이 사건 매매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합계 1,986,938,838원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라고 가정할 때 B가 이 사건 매매부동산을 처분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돈은 513,061,162원 상당에 불과하였다는 점, ③ B가 매매대금 중 319,85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즉시 S에게 송금하여 B와는 무관한 R의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던 점, ④ 피고가 2020. 6. 5. 제출한 준비서면에 따르면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 매매대금 중 320,000,000원을 R의 채무 변제를 위해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은 B의 적극재산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이 사건 매매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로서 B에 대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 역시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단지 B가 이 사건 매매부동산을 시세보다 염가에 처분한 것이 아니라거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

3)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매매부동산을 처분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27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을 제8호증의 기재 등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7년 9월경부터 Q 및 그 사실혼 배우자인 S가 운영하는 B, R, AB와 거래를 하여 왔던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 소유의 이 사건 매매부동산에는 다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점, ③ R 역시 2018년 11월경 이래로 피고에 대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면서 사실상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그 중 3억 2,000만원을 변제받을 수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및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1) 원상회복의 방법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마쳐졌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바, 피고의 원상회복의무 이행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원상회복의 범위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부동산의 변론종결일 당시 시가는 2,500,000,000원으로 추인되고, 사해행위 이후에 말소된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합계 1,986,938,838원(= 중소기업은행의 채권액 1,626,938,838원 + L의 채권액 210,000,000원 + 주식회사 M의 채권액 150,000,000원)인바, 513,061,162원(= 2,500,000,000원 - 1,986,938,838원)이 일단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 한도가 된다2).

그런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B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액 160,376,026원3)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액은 2019. 2. 12.

기준으로 144,859,800원이고, 이후 원고는 B와 거래를 하지 않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9. 3. 27. 이후인 2019. 6. 10.부터 거래를 재개하여 2019. 7. 31.까지 거래를 한 결과 채권액이 160,376,026원이 되었다.

따라서 위 144,859,800원을 초과한 채권액은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보전채권액인 144,859,8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위 144,859,8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144,859,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판사윤남현

판사장래아

판사김지영

별지

1) 갑 제10호증(2018. 10. 1.자 공정증서)의 채무금액은 5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채권자 ○이 2019. 3. 21. 대구지방법원 P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할 당시 청구금액을 350,000,000원으로 하였으므로, 공정증서 작성 이후 일부 채무가 변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바, 채무자의 무자력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 350,000,000원만을 채무액으로 본다.

2) 원고가 사해행위취소를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매매부동산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국한되나, 이 사건 매매부동산 중 이 사건 부동산이 가장 주된 부동산이어서 위 매매대금 중 대부분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부동산이 모두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일괄하여 계산함이 상당하여 보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제1심 법원의 이와 같은 계산방식과 관련하여 아무런 다툼이 없으므로, 동일하게 계산한다.

3)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원고가 청구취지에 기재한 163,076,026원은 옳기로 보인다.